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90
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24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3월 26일, 정진술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9년 4월 24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정진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원인자부담금 '선납' 부과원칙 확대(안 제3조제4항)
- (2)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개정(안 별표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도로굴
착복구기금 설치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해당 없음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 요

- 본 개정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원칙의 예외 사항과 복구비용의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예외적 후납 적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일시 체납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도로법」 제91조1)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굴착 행위의 시행자에게 도로복구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, 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제3조	<p><원인자부담금 선납 원칙 예외 규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• 전기·가스·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•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	<p><원인자부담금 선납 원칙 예외 규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삭제> • <삭제> •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
<별표1>	<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산출방법>	<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산출방법>

- 1) 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③~⑥ (생략)

제2호	도로굴착 면적(복구금액) × ‘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’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	도로복구금액(직접복구 + 간접복구금액) × *요율 ※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7조(건설기술용역대가)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(전면 책임감리비 요율)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.
-----	--	---

■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사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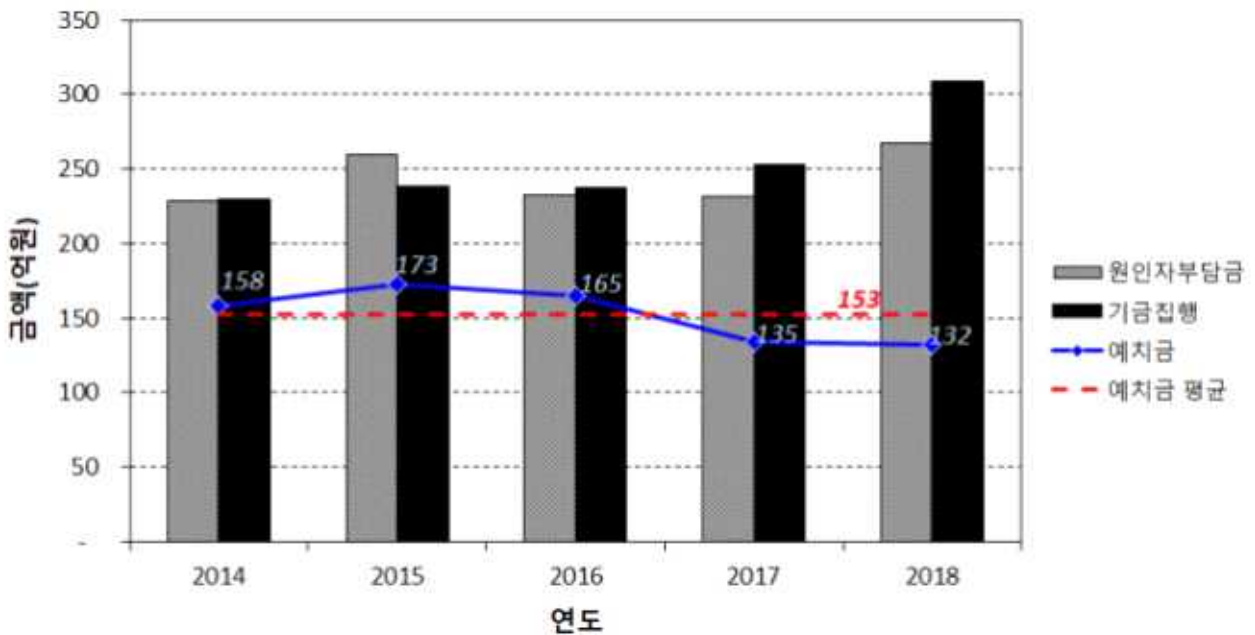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에 근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, 징수된 수입은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적립하며 도로굴착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음.
-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도로사업소가 기금운용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복구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공사를 발주 및 관리하고 있으며,
-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, 시 전체 도로(시도 및 구도)에서 최근 5년 동안 총 도로굴착복구 건수는 217,480건으로 연평균 43,496건의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, 이 중 90%(195,671건)가 소규모 공사에 해당함([표] 참조).

[표] 최근 5년간 도로굴착복구 공사 현황(건/a)

구 분	계		2014		2015		2016		2017		2018		
	건수	면적	건수	면적	건수	면적	건수	면적	건수	면적	건수	면적	
계	217,480	45,976	39,348	8,923	39,483	8,998	44,033	8,870	46,636	10,088	47,980	9,097	
소 계	소규모	195,671	7,110	34,812	1,243	35,715	1,310	39,851	1,422	42,052	1,547	43,241	1,588
	일반	21,809	38,866	4,536	7,679	3,768	7,688	4,182	7,448	4,584	8,541	4,739	7,509
구 도	소규모	158,000	5,451	26,828	906	29,157	1,007	32,306	1,088	34,386	1,219	35,323	1,232
	일반	13,336	20,335	2,401	3,795	2,419	4,345	2,652	4,352	2,946	4,123	2,918	3,720

시 도	소규모	37,671	1,659	7,984	338	6,558	303	7,545	334	7,666	329	7,918	356
	일반	8,473	18,531	2,135	3,884	1,349	3,343	1,530	3,096	1,638	4,418	1,821	3,789

-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평균 기금 예치금은 153억원 수준이며, 최근 들어 '17~'18년 기금 집행액이 증가함에 따라 예치금이 평균치보다 감소(18억원~21억원)하고 있는 추세임 ([그림] 참조).



[그림] 원이자부담금 징수와 기금 운영 현황

- 참고로, 원이자부담금의 징수는 현행 조례 제6조2)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이며, 자치구가 징수한 원이자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시스템(<https://hidigp.seoul.go.kr/>)을 통해 시도(市道) 굴착공사에 대한 것은 시 도로굴착복구기금 계정으로, 구도(區道) 굴착공사에 대한 것은 구 도로굴착복구기금 계정으로 각각

2) 제6조(권한의 위임) 제3조,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원이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·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적립되어 운용되고 있음.

■ 원인자부담금 선납원칙 예외규정 일부 삭제 건(안 제3조제4항)

-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예외규정 즉, 제1호의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(이하 “공공사업”), 제2호의 전기·가스·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의 공익사업(이하 “공익사업”), 제3호의 천재지변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 도로굴착공사 대부분이 이들 예외규정 중 제1호 및 제2호의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 후납이 가능한 실정이며, 이로 인해 일부 구청에서는 예외규정에 근거해 후납징수함에 따라 연말에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회계연도를 넘기는 일시적 체납이 관행화되고 있는 형편임.
- 실제로 원인자부담금 일시적 체납액은 ‘14년 7억원에서 ‘18년 19억원으로 171% 증가하였고, ‘18년 12월말 기준 일시적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(상·하수도분야)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97%를 차지하는 등 이 같은 불합리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([표] 참조).

[표] 분야별 일시적 체납 현황('18.12월말 기준)

구 분	계	상수도	하수도	전기	통신	가스
체납액 (백만원)	1,867	1,493	311	40	-	23

- 이는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자치구가 제3조제4항의 선납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예외규정 제1호와 제2호인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으로 간주하여 후납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지금의 불합리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임 ([표] 참조).

[표] 자치구별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 처리현황

자치구	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 처리현황	
	선납 적용 여부	후납 적용 사례
종로구	△	개인사업자만 후납
중구	△	수도사업소, 자치구(치수과), 도로사업소
용산구	○	
성동구	○	
광진구	○	
동대문구	○	
중랑구	△	에스코,수도사업소(개인사업자만선납)
성북구	○	
강북구	△	수도사업소(개인사업자만 선납)
도봉구	△	수도사업소만 선납
노원구	△	수도사업소, 자치구(치수과), 개인사업자
은평구	○	
서대문구	○	
마포구	○	
양천구	○	
강서구	△	수도사업소, 자치구(치수과)
구로구	△	KT, LG유플러스, 도로사업소
금천구	△	수도사업소, 귀뚜라미에너지
영등포구	○	

동작구	○	
관악구	○	
서초구	○	
강남구	○	
송파구	△	자치구(치수과)만 후납
강동구	○	
* 긴급굴착공사(누수 등)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후납 허용		

- 따라서 본 개정안이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선납부과 원칙 예외사항을 ‘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등 불가피한 경우’로만 한정하려는 것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 하겠음.

■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변경에 관한 건(안 별표1 제2호)

- 현행 조례 별표1의 제2호에 따르면 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는 도로굴착 면적에 「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」 중 ‘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효율’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는 반면,
- 개정안에서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의 합인 도로복구금액에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7조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 중 전면 책임감리비 효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정한 효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려는 것으로,
- 이는 현행 감독업무비 산정기준 중 “도로굴착 면적(복구금액)”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의 합인 도로복구금액을 의미함에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“도로복구금액(직접복구+간접복구금액)”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, 여기에 곱해지는 효율에 대

해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바, 이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.

[표]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비교

구분	산출방법	
현행	감독업무비= 도로굴착 면적 (복구금액)	× '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'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
개정안	감독업무비= 도로복구금액 (직접복구+간접복구)	× 도로복구금액(직접복구 + 간접복구금액) × *요율 *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7조(건설기술용역대가)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(전면 책임감리비 요율)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↓
동일
(표현 수정)

↓
현행: 비상주 감리 요율
개정안: 상주 감리 요율

- 여기서, 감독업무비 '요율'의 경우, 현행 조례가 2010년에 비상주 감리³⁾에 대한 요율(일부개정, '10.7.15.)을 도입한 이후 2015년까지는 비상주 검측 및 시공감리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비용 상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,
- 서울시가 2016년부터는 비상주가 아닌 상주감리 형태의 책임감리(시공감리+발주청 권한대행)방식으로 전환하였고, 2017년부터는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권역을 세분화(2개→3개)하여 감리원을 증원(16명→24명)함에 따라([표] 참조),

[표] 도로굴착복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(감리용역)

3)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

구 분		2015	2016	2017~2018
사업권역		2개 (강남권역, 강북권역)		3개 (성동,동부북부,서부/남부,강서)
방 식		시공감리 (검측감리+품질,시공,안전)	책임감리 (시공감리+발주청 권한대행)	
인 원		16명	16명	24명
예 산 (백만원)	도로굴착복구기금	600	770	1,500
	노후포장사업비	700	700	700

- 감독업무비 징수액(8.6억원, '18년도 기준)이 실제 감리비 투입액 즉,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비(13.6억원, '18년도 기준)에 크게 미달하여 공사비가 적자로 돌아섰고 이로 인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임([표] 참조).

[표]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감독업무비 수입/지출 현황

회계연도	징수액*	지출액	차액
2015	942,495,000	543,938,600	398,556,400
2016	791,147,585	758,846,000	32,301,585
2017**	827,073,800	1,481,580,000	-654,506,200
2018	863,036,570	1,356,662,000	-493,625,430
2019(계획)	861,937,500	1,500,000,000	-638,062,500

* '10년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 개정을 통해 굴착복구 감독업무 비용을 굴착원인자에게 부과 징수(강남/강북권역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)

- 관련근거 : 특별시도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개선(도로관리담당관-14775호,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0호, 2010.7.9.)

** '17년 사업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를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발주하며, 전면책임감리(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) 시행 - 관련근거 : 「'17년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」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계획(도로관리과-1732호, 2017.1.24.)

- 따라서 본 개정안처럼 감독업무비 산정기준을 현행 비상주 감리 요율에서 상주 감리 요율인 '전면 책임감리비 요율'로 전환할 경우 지금의 원인자부담금 적자 운영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술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49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6일

발 의 자 : 정진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채유미, 이승미, 이은주, 이세열,
이광호, 김정환, 성흠제, 최기찬,
오한아, 이동현, 김종무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원인자부담금 '선납' 부과원칙 확대(안 제3조제4항)

나.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개정(안 별표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별표1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

구 분	차 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 도		
		블록 및 화강석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	
최소굴착면적	1.2m × 1.2m	1.2m × 1.2m	1.2m × 1.2m	
최소굴착폭	1.2m	1.2m	1.2m	
간접손계영향 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25m 구간 ·굴착깊이가 2.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3m 구간 (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.6m까지의 범위) ·굴착깊이가 2.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/5까지 범위 (굴착시 파일,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.3m씩 추가 가산) ·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.3m구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4m구간 ·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 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.25㎡ (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× 1m로 계산한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 장도로의 경우에 준한 다. ·단,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 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 류의 경우에 준한다. 	
복 구 비 용	직접	직접손계부분 복구비	직접손계부분 복구비	직접손계부분 복구비
	간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아스팔트포장도로 -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씩 우기(두께 5cm) 비용 ·콘크리트포장도로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 팔트 덧씩우기(5cm) 비용 ·아스팔트덧씩우기포장도로(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)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 팔트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 팔트 덧씩우기(5cm) 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블록류.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 간의 표층 시공비 (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%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 한다) ·화강석류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기초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 간의 표층 시공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 공비 ·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 간의 덧씩우기(4cm) 비용
	강 독 업 무 비	도로복구금액(직접복구 + 간접복구금액) × *요율		

*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7조(건설기술용역대가)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(전면 책임감리비 요율)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</u></p> <p>2. <u>전기·가스·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</u></p> <p>3. <u>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3조 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<별표 1>

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율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(제3조제3항 관련)

1. (생략)
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손케영향 구간 및 복구비용

구분	차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도	
		블록 및 화강석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
최소굴착면적	(생략)		
최소굴착폭			
간접손케영향 구간			
복구 직접 간접			
비용 감독 업무비	도로굴착 면적(복구금액) × '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'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		

3.~4. (생략)

<별표 1>

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율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(제3조제3항 관련)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구분	차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도	
		블록 및 화강석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
최소굴착면적	(현행과 같음)		
최소굴착폭			
간접손케영향 구간			
복구 직접 간접			
비용 감독 업무비	도로복구금액(직접복구 + 간접복구금액) × *요율		

*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7조(건설기술용역대가)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(전면 책임감리비 요율)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3.~4. (현행과 같음)